

‘언론보도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한다’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에서도 보듯,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 냥 빚을 지기도 한다. 그릇된 보도나 과장 혹은 축소로 인한 왜곡보도, 한쪽 주장만 담은 편파보도, 취재 대상이 원치 않는 영상과 소리를 내보내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한 보도 등은 사회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빛’이 되어 돌아온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실질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이 사람에게 진 ‘빛’을 갚고 상호간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난 해 9월부터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이하 ‘손배 전담부’)를 설치, 운용해오고 있다. 손배 전담부 신설배경과 주요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례, 손배 전담부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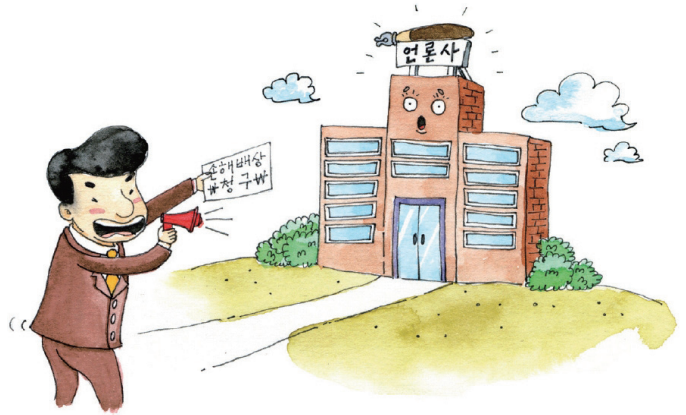
글.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제8중재부 중재위원



손배 전담부 신설 배경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소송절차가 아닌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를 통해서도 피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조정청구건수 중 손해배상청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29.3%, 2007년 33.5%, 2008년 34.0%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44.4%를 기록해 정정보도청구건수를 추월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구건수가 많다고 반드시 활발한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통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신청인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병합 청구된 사건을 심리하다 보면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수용하겠다는 언론사들의 반응을 많이 보게 된다. 신청인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라도 얻어내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언론사 입장에서 본다면 신청인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얻어낼 생각으로 무리하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가 조건부로 취급되거나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현상은 손해배상청구를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보인다.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적절한 위자료 산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10월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물로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마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는 해당 보도의 법익 침해 정도와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의 양태나 내용,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2012년 9월부터는 중재위원 중 손해배상청구사건 심리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손배 전담부’를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적절한 위자료
산정이
필수적”

주요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례

손배 전담부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손배 전담부’가 신설된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 현재까지 가장 높은 액수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모 방송사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일반 분양사무실에서 정상 업무 중인 신청인들의 모습을 마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건이었다. 해당 방송사는 사건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영상을 사건 보도에 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사 측이 신청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1,8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었다.

초상권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는 언론사가 절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죄혐의자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를 하였으나, 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얼굴, 목소리, 이름, 집 등을 그대로 방영한 사례가 문제가 되었다. 물론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보도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심리 결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이를 보도한 2개 매체가 신청인에게 각각 5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또 다른 초상권 관련 사건으로는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유족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신청인들에게 150만 원의 손해배상이 지급된 사건도 있었다.



성명권과 관련된 청구사건으로는 지난 해 11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이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들의 실명을 언급한 사건이 있었다. 손배 전담부는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한 것은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음성권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원액기(쥬서기와 달리 과일을 짜서 즙을 내는 제품)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쇼호스트(상품판매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 신청인의 음성, 흐릿하게 처리된 얼굴, 손 등을 방영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이 있었다. 손배 전담부는 쇼호스트라는 신청인의 직업상 음성만으로도 신청인이 누구인지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 방송사의 음성권 침해를 인정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지급되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일 년 전 손해배상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다수 언론사들이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여 보도함으로써 다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신청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또 한 번의 손해배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2년 최고액(1,000만 원)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인 이 사건은 언론사가 정보당국의

전언을 근거로 모 국가 대통령의 딸과 신청인이 결혼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일 년 후 몇몇 언론사들은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결혼설을 다시 한 번 보도했고, 심리 결과 언론사의 명백한 실수가 인정되어 언론사별로 각 3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

언론사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신청인은 단순한 기사삭제 보다는 정정보도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관련기사가 보도될 때 동일한 오보의 반복을 막는 조치로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손배 전담부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

언론사들의 속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독자들의 권익의식이 향상될수록 손해배상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처럼 손해배상 조정제도 또한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가 손배 전담부를 운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배 전담부 중재위원과 조사관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손배사건 심리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언론중재법에 처음 도입될 당시 일부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손배 전담부는 이러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손배 전담부는 사안별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조정자로서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 등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원회가 이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정리하여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당사자들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손배 전담부가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조정을 지속해 나간다면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공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위원회를 통한 언론분쟁 사건의 일회적, 종합적 해결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조정제도가 소송을 대체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로 정착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나 언론사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한다.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위원회를 통한 언론분쟁 사건의 일회적, 종합적 해결이 많아진다는 의미”

